

## 기자재선정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의 합리적인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위원회는 기자재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며, 각 부서 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2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각 학부(과) 실험실습 교육 내용과 부합되는 기자재 선정
2. 학부(과)별 구매 계획의 합리적인 조정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6조(임기)**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**제8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심의사항처리)**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0조(업무관장)** 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1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이 된다.

**제12조(재정)**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, 조사비, 여비,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